

원주단계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
전략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2020.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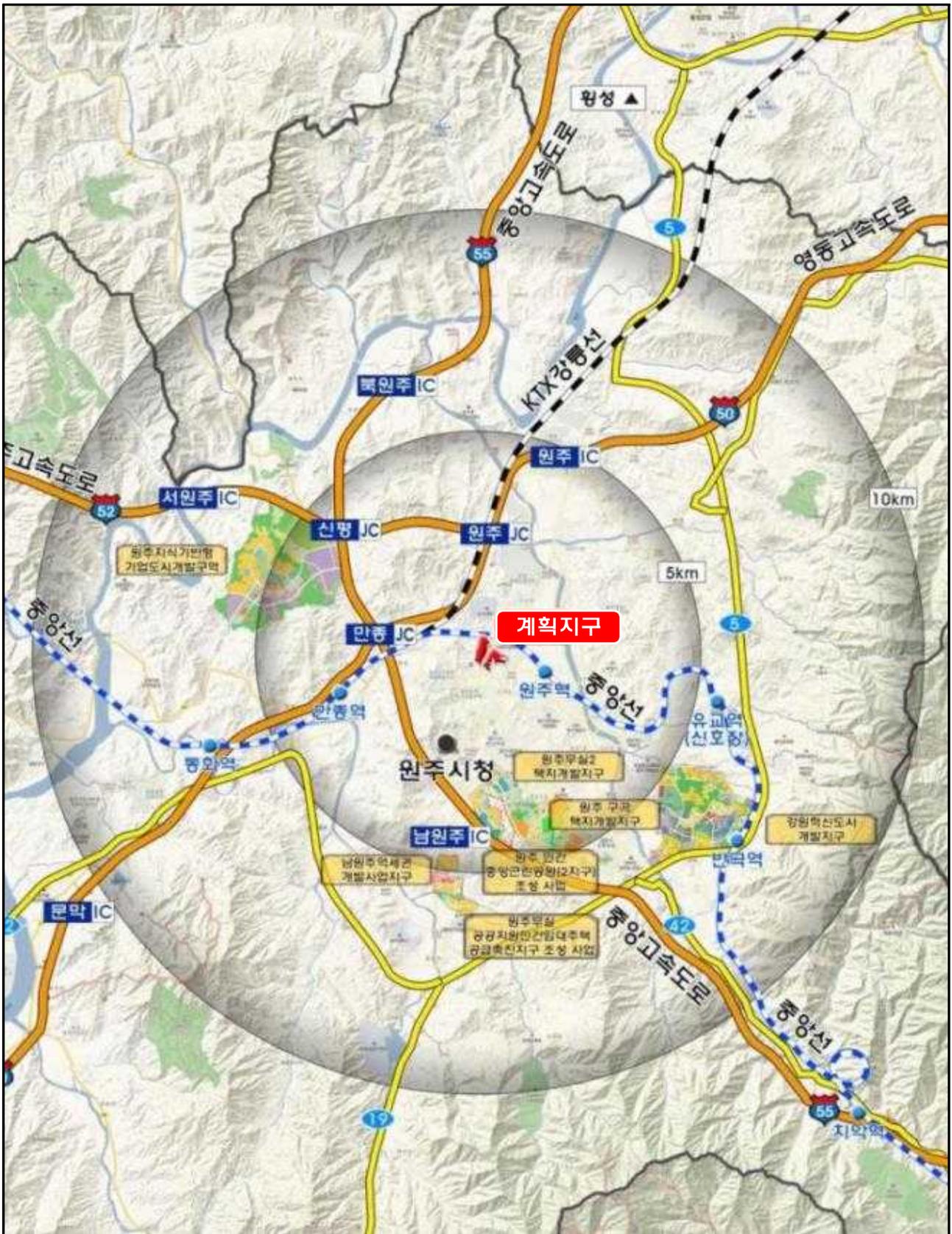
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본 계획지구는 수도 서울과 1시간 30분대의 거리이며, 중앙선(원주-용문간), KTX강릉선, 광주 원주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가 인근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로 교통접근성 및 광역 교통여건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고, 주변으로 대학교, 초·중·고등학교 등이 위치하여 주택 및 임대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임
- 정부에서는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주택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어 서민·중산층 주거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주거복지 로드맵(17.11.29)을 통해 장기간 거주 가능하고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제도권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 중에 있음
- 또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정부 정책발표 : 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 조성)에 따라 2020년 7월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단계근린공원)을 포함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원주시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및 난개발 방지를 도모하고자 함

1.2 계획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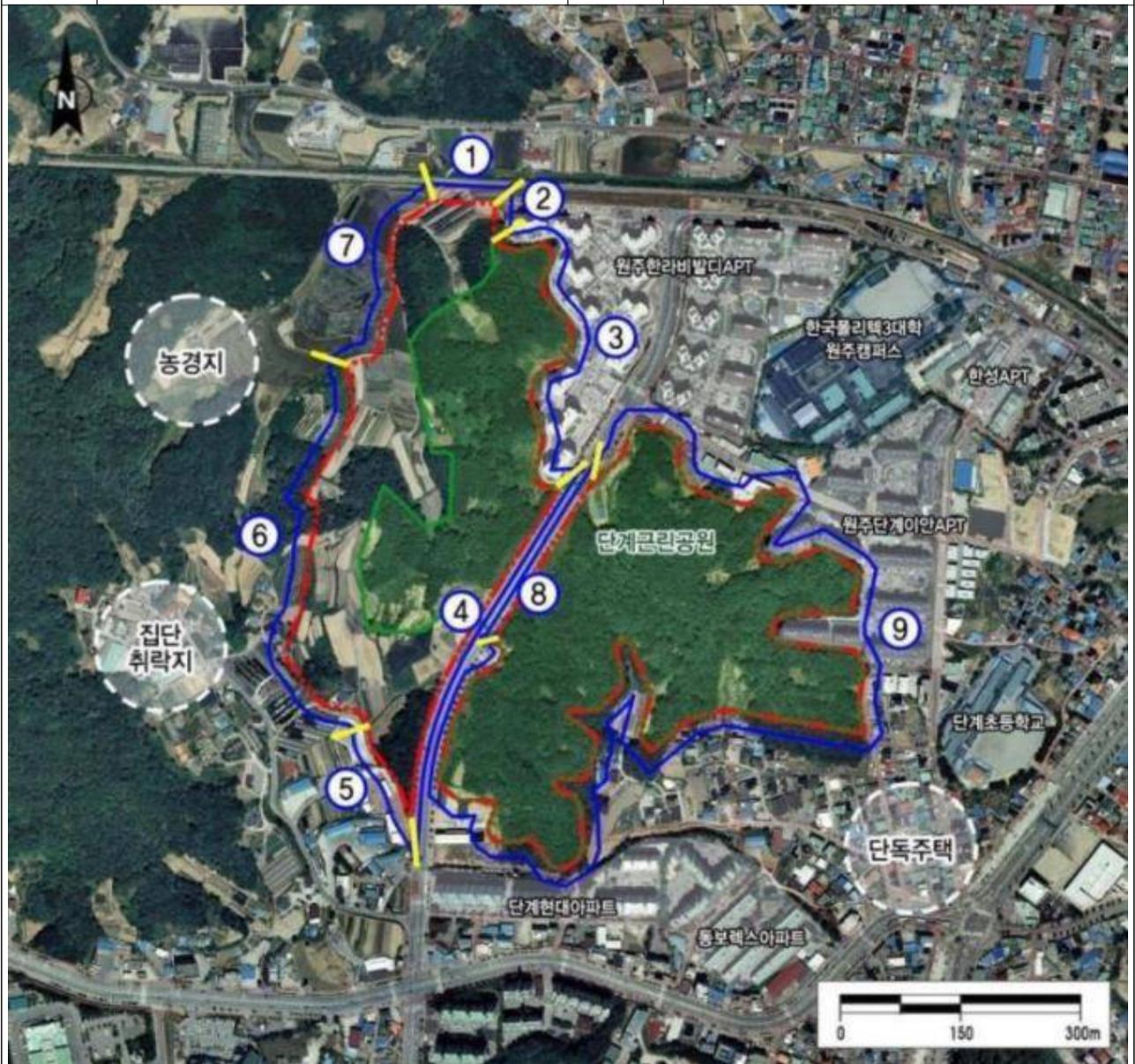
- 계 획 명 : 원주단계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일원
- 면 적 : 276,653m²
- 계 획 인 구 : 4,363인(1,939세대)
- 사 업 기 간 : 지구지정일 ~ 2025년 06월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승 인 기 관 : 국토교통부
- 협 의 기 관 : 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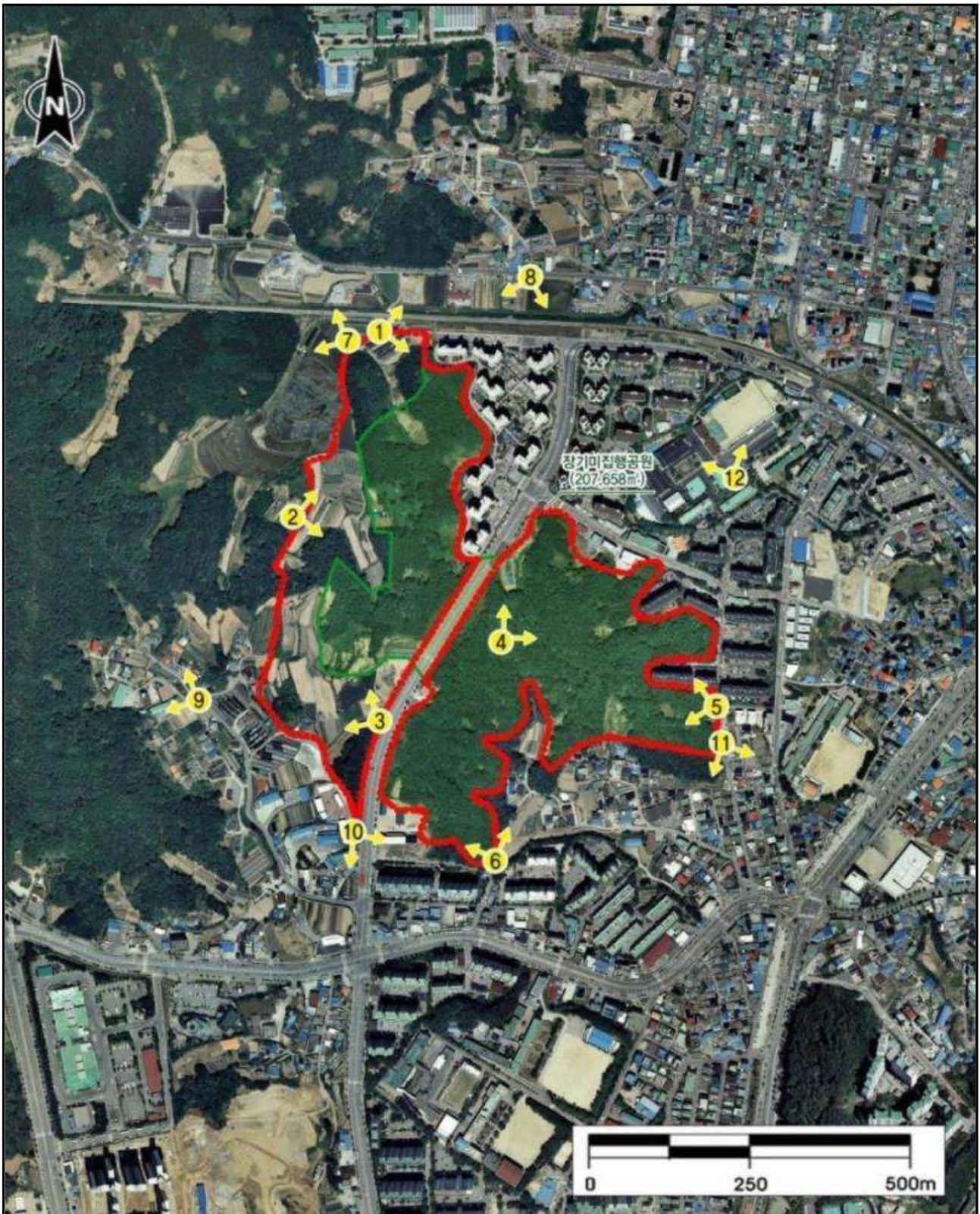


(그림 1.2-1) 계획지구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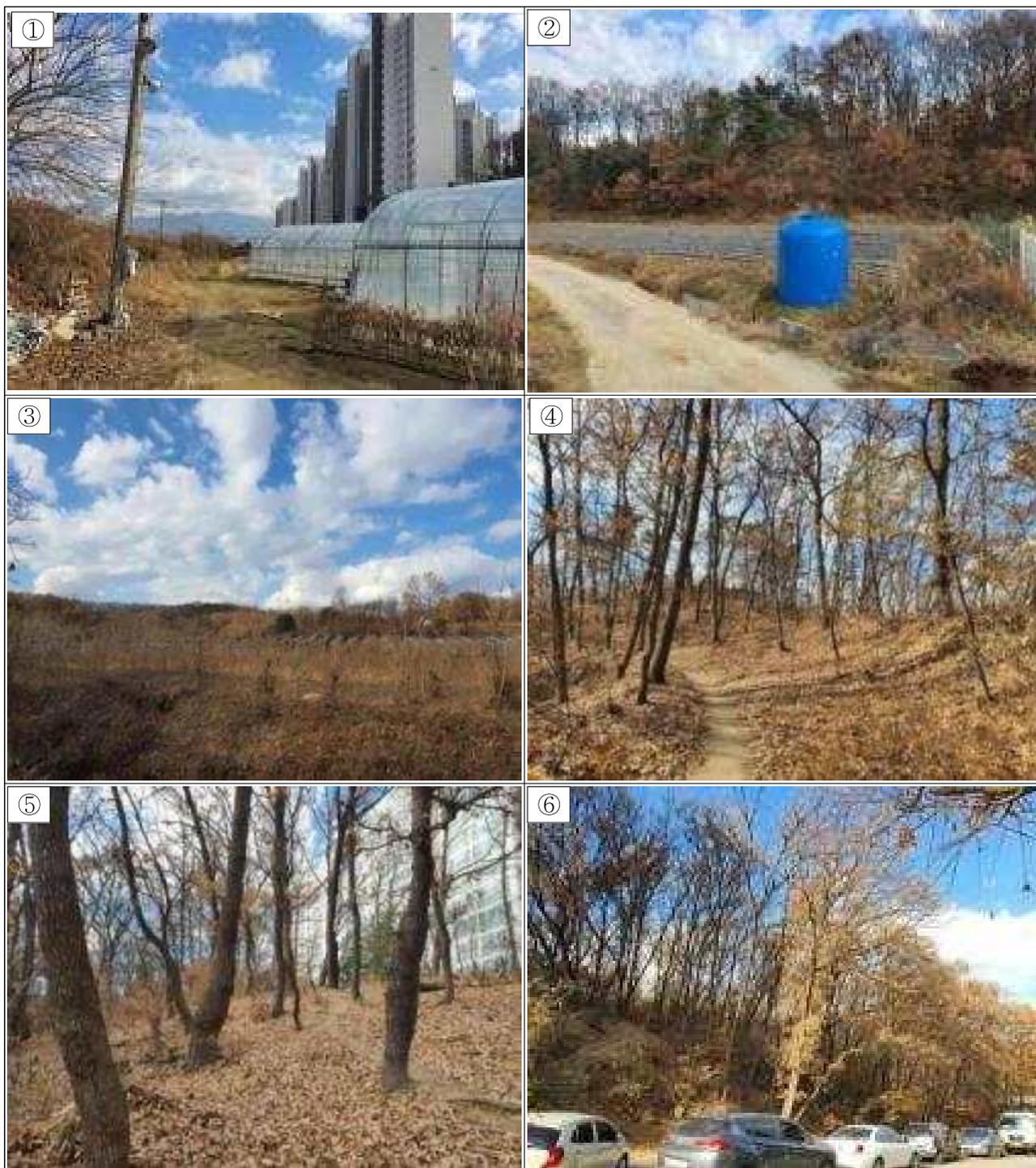
〈표 1.2-1〉 계획지구 지구계 결정 사유도

구분	설정사유	구분	설정사유
①	중로2-5호선 경계(포함)	⑥	지적도 경계
②	중로2-60호선 경계(포함)	⑦	현황도로 경계(미포함)
③	다박골제2호공원(단계공원) 경계(포함)	⑧	대로2-6호선 경계(미포함)
④	대로2-6호선 경계(미포함)	⑨	다박골제2호공원(단계공원) 경계(포함)
⑤	현황도로 경계(미포함)	-	-





(그림 1.2-2) 계획지구 현황사진 위치도



(그림 1.2-3) 계획지구 내부 현황사진



(그림 1.2-4) 계획지구 외부 현황사진

제 2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개요

2.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 계획수립기관 : 국토교통부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총 9인(승인기관, 협의기관,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
- 결정사항 : 대상지역의 설정,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 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2. 토지이용구상안 / 3. 대안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②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2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2.1 대상지역 설정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 계획의 성격, 입지 여건, 계획지구 주변 운영 및 개발 중인 사업, 환경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계획 수립 시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전성,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등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공동주택, 주택지역 및 학교 등)에 대해 직·간접적 환경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의 검토를 위해 다음과 같이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범위를 설정함

〈표 2.2.1-1〉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전략환경영향평가)

구 분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사유	대상지역 설정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계획의 적정성		○본 계획 관련 기존 개발계획 및 상위계획(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관련계획(환경보전계획 및 환경관련 계획 등)과 동 계획과의 연계성 및 부합 여부 조사결과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입 지 의 타 당 성	자 연 환 경 의 보 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계획지구를 포함한 조사지역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계획시행으로 인해 동·식물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경계)에서 100~300m 이내	공사시 운영시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절·성토로 인한 지형변화 ○강우시 토사유출 및 비옥도 유실	○ 계획지구	공사시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발생 (지형변화,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 입지 등)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시	
	생 활 환 경 의 안 정 성	환 경 기 준 의 부 합 성	수환경의 보전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발생 및 투입인원으로 인한 오수발생 등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 ○운영시 발생 오·폐수 및 비점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수용하천에 미치는 영향 ○수질오염총량 검토(한강수계 섬강B 단위구역)	○ 계획지구 및 주변수계	공사시 운영시
			기 상	○ 계획지구 및 인근 지역 국지적 기상특성 분석 ○타 항목 기초자료 활용	○ 계획지구 주변 기상대 및 AWS	-
대 기 질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비산먼지 및 배기가스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운영시 연료사용(난방 및 취사) 및 주변 차량운행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지구(경계) 반경 500m 이내		공사시 운영시		

〈표 2.2.1-1 계속〉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전략환경영향평가)

구 분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사유		대상지역 설정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입 지 의 타 당 성	생 활 환 경 의 안 정 성	온실 가스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 ○계획지구 운영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 ○온실가스 배출 저감대책 수립	○계획지구	공사시 운영시
		토 양	○공사시 폐유발생(건설장비),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 예상	○계획지구	공사시
		소음· 진동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으로 소음·진동 발생 및 영향 예상 ○운영시 차량운행(봉화로 등)으로 인한 소음 발생 및 영향 예상	○계획지구(경계) 반경 300m이내	공사시 운영시
		일조장해	○공동주택용지 내 건축물 입지로 인해 일조장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영향 검토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시
		전파장해	○계획시행시 고층건물 입지로 인해 지구 서측 무상마을 전파장해(TV, 라디오 수신 등) 영향 검토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시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계획지구 주변 환경기초시설 연계처리 적정성 검토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공사시 지장물 철거, 공사장비 및 공사인부 운용으로 인한 폐유·폐기물 등 발생 ○운영시 계획지구 이용에 따른 폐기물 발생	○계획지구	공사시 운영시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친환경적인 토지이용)	환경 친화적인 토지이용	○계획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변화가 수반되는 지역	○계획지구	운영시
인구·주거	○계획시행으로 인한 인구·주거의 변화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시		

주) 1. 동·식물상 조사범위 : 「환경영향평가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의 자연생태환경조사 가이드라인」 참조(면사업 기준)
 - 현지조사 범위 : 300m이내(포유류, 조류), 100m이내(식물상, 식생,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상·하류 100m 범위(어류, 담수무척추동물)
 - 광역조사 범위 :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환경부 전국자연환경조사 기본단위인 9개의 격자를 포함한 지역
 2. 「원주시 단계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2018.06, 두산건설(주)」를 참고하여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을 계획함

자료 : 1.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
 2.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2018. 12. 12, 환경부
 3.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 01, 환경부
 4.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 12, 환경부
 5. 「원주시 단계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2018.06, 두산건설(주)」



(그림 2.2.1-1) 대상지역 설정도(전략환경영향평가)

나. 환경영향평가

-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등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공동주택, 주택지역 및 학교 등)의 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참고자료 등에 의거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범위를 설정함

〈표 2.2.1-2〉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환경영향평가)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 및 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 고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식생변화 및 동·식물 서식처 훼손 등의 직·간접적 영향 예상	○사업지구(경계)에서 100~300m 이내	공사시 운영시
	자연환경 자 산	○경관적, 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이나 형상의 자연환경 자산 변화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대기 환경	기 상	○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 국지적 기상특성 분석 ○타 항목 기초자료 활용	○사업지구 주변 기상대 및 AWS	-
	대 기 질	○공사시 투입장비 및 토공에 의한 비산먼지 등 오염물질 발생 및 대책수립 ○운영시 연료사용(난방 및 취사) 및 차량통행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및 대책수립(주변 개발사업을 고려한 누적평가)	○사업지구(경계) 반경 500m이내	공사시 운영시
	온실가스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 ○사업지구 운영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 ○온실가스 배출 저감대책 수립	○사업지구	공사시 운영시
수 환경	수 질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발생 및 투입인원으로 인한 오수발생 ○운영시 발생 오·폐수 및 비점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수용하천에 미치는 영향	○사업지구 및 주변 수계	공사시 운영시
	수리·수문	○사업지구 주변지역 주요 수계 유황변화 분석 및 대책 수립 ○운영시 도시화로 인한 강우시 홍수유출량 변화	○사업지구 및 주변 수계	공사시 운영시

〈표 2.2.1-2 계속〉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환경영향평가)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 및 사유	대상지역 범위	비 고
토지 환경	토지이용	○용지편입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예상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 적정성 (토지이용계획 등)	○사업지구	공사시 운영시
	토 양	○공사시 폐유발생(건설장비),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 예상	○사업지구	공사시
	지형·지질	○질·성토로 인한 지형변화 ○강우시 토사유출 ○비옥토 유실	○사업지구	공사시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지장물 철거, 훼손수목, 공사장비 및 공사인부 운용으로 인한 폐유·폐기물 등 발생 ○운영시 사업지구 이용에 따른 폐기물 발생	○사업지구	공사시 운영시
	소음·진동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으로 소음·진동 발생 및 영향 예상 ○운영시 차량운행(봉화로 등)으로 인한 소음 발생 및 영향예상	○사업지구(경계) 반경 300m이내	공사시 운영시
	위락·경관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발생 (지형변화 및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 입지 등)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시
	일조장해	○공동주택 및 기타 건축물 입지로 인해 일조장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영향 검토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시
	전파장해	○사업시행시 고층건물 입지로 인해 지구 서측 무상마을 전파장해(TV, 라디오 수신 등) 영향 검토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시
사회 경제 환경	인구·주거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구·주거의 변화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시

- 주) 1. 동·식물상 조사범위 : 「환경영향평가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의 자연생태환경조사 가이드라인」 참조(면사업 기준)
 - 현지조사 범위 : 300m이내(포유류, 조류), 100m이내(식물상, 식생,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상·하류 100m 범위
 (어류, 담수무척추동물)
 - 광역조사 범위 :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환경부 전국자연환경조사 기본단위인 9개의 격자를 포함한 지역
 2. 「원주시 단계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2018.06, 두산건설(주)」를 참고하여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을 계획함
 3.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2018. 12. 12, 환경부」에 의거하여 환경영향
 평가서 “부록”편에 본 계획 관련 상위계획(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관련계획(환경보전계획 및 환경관련계획 등)과
 동 계획과의 연계성 및 부합 여부 조사결과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결과를 제시하겠음

- 자료 : 1.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시행령 【별표1】 제2호)
 2.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2018. 12. 12, 환경부
 3.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 01, 환경부
 4. 「원주시 단계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2018.06, 두산건설(주)」



(그림 2.2.1-2) 대상지역 설정도(환경영향평가)

2.2.2 대안의 설정

가. 대안의 종류 선정

- 대안이란 환경적 목표와 기준유지를 전제로 행정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입지 등에 대한 여러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의미함
- 본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검토할 대안의 종류는 계획비교와 수요·공급, 입지를 대안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비교·검토하였음

〈표 2.2.2-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대안종류	대안 선정방법	선정	기준
계획비교	○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	계획수립 여부
수단·방법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
수요·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토지이용 구상안 비교
입 지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	대상지역, 지구계 비교
시기·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 (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
기 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

자료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나. 대안의 비교·검토

1) 계획비교(Aciton, No action)

- 【행정계획 수립(Action) 및 행정계획 미수립(No Action)】에 따른 대안별 환경적인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대안별 비교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2.2.2-2〉 계획비교(Aciton, No action)

평가영역	대안 1	대안 2
	개발기본계획 수립(Action)	행정계획 미수립(No Action)
토지이용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을 활용·배치를 통해 공원과 공동주택이 어우러지는 친환경단지 조성 및 도시숲 공간 제공 ○ 장기간 방치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를 활용한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서민·중산층 주거불안 해소 ○ 사업시행에 따른 부분적인 환경영향이 예상되나, 항목별 저감대책(안) 수립을 통한 영향 최소화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7월 실효되는 장기미집행공원(원주 단계근린공원)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 무분별한 토지이용에 따른 효율성 저하 또는 토지이용계획상의 변화 없음 ○ 사업 미시행으로 추가적인 환경영향은 발생치 않아 현재 상태의 환경기준 유지에 문제없음
각종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 각종 환경관련 보호지역을 저촉하지 않음	○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없음
생태계 훼손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환경성평가등급 검토결과, 3~5등급이 전체지역의 77.0%를 차지하며, 임야 지역의 일부 1등급 지역은 최대한 공원으로 조성을 계획함 ○ 계획지구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단계공원) 중 산림이 양호한 구릉지는 공원으로 활용하여 환경친화적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 생태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없음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	○ 공사시 절·성토로 인한 불가피한 지형변화가 발생되나 저감대책으로 훼손 최소화	○ 지형의 변화가 없으므로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 주변 자연환경 및 개발사업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 생활환경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됨	○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없음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계획시행에 따른 자연경관의 변화가 다소 예상되나 적정 개발계획의 수립 등을 통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계획을 시행함	○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없음
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에 미치는 영향	○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미미한 환경오염 발생이 예상되나 각종 저감대책으로 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환경기준 유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검토결과	○ 계획시행에 따른 토지이용효율을 증대시키며,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도모, 지역발전의 활성화, 공공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한 대안 1을 선정함	
선정(안)	○	

2) 수요·공급에 따른 비교·검토

- 【수요·공급】에 따른 비교·검토를 위하여 토지이용구상안에 대한 2개의 대안을 비교·검토하였음

〈표 2.2.2-3〉 수요·공급에 따른 대안 비교·분석

구분	대안1	대안2																																										
토지 이용 구상안 도																																												
토지 이용 구상안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면적(m²)</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276,653</td> <td>100.0</td> </tr> <tr> <td>공동주택용지</td> <td>84,303</td> <td>30.4</td> </tr> <tr> <td>근린생활시설</td> <td>4,875</td> <td>1.8</td> </tr> <tr> <td>기타시설</td> <td>-</td> <td>-</td> </tr> <tr> <td>공원 및 녹지</td> <td>176,510</td> <td>63.9</td> </tr> <tr> <td>공공시설용지</td> <td>10,965</td> <td>3.9</td> </tr> </tbody> </table>	구분	면적(m ²)	비율(%)	총 계	276,653	100.0	공동주택용지	84,303	30.4	근린생활시설	4,875	1.8	기타시설	-	-	공원 및 녹지	176,510	63.9	공공시설용지	10,965	3.9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면적(m²)</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276,653</td> <td>100.0</td> </tr> <tr> <td>공동주택용지</td> <td>79,082</td> <td>28.6</td> </tr> <tr> <td>근린생활시설</td> <td>3,741</td> <td>1.4</td> </tr> <tr> <td>기타시설</td> <td>1,392</td> <td>0.5</td> </tr> <tr> <td>공원 및 녹지</td> <td>183,895</td> <td>66.4</td> </tr> <tr> <td>공공시설용지</td> <td>8,543</td> <td>3.1</td> </tr> </tbody> </table>	구분	면적(m ²)	비율(%)	총 계	276,653	100.0	공동주택용지	79,082	28.6	근린생활시설	3,741	1.4	기타시설	1,392	0.5	공원 및 녹지	183,895	66.4	공공시설용지	8,543	3.1
구분	면적(m ²)	비율(%)																																										
총 계	276,653	100.0																																										
공동주택용지	84,303	30.4																																										
근린생활시설	4,875	1.8																																										
기타시설	-	-																																										
공원 및 녹지	176,510	63.9																																										
공공시설용지	10,965	3.9																																										
구분	면적(m ²)	비율(%)																																										
총 계	276,653	100.0																																										
공동주택용지	79,082	28.6																																										
근린생활시설	3,741	1.4																																										
기타시설	1,392	0.5																																										
공원 및 녹지	183,895	66.4																																										
공공시설용지	8,543	3.1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북측 경계부에 위치한 기존 공동주택(원주한라비발디APT)과 연계하여 수요성 높은 주거지 조성 ○ 계획지구 북측의 기존 공동주택과 지구 내 중심의 근린생활시설 및 공원과 연계한 계획 및 배치 ○ 계획지구 남측의 비정형화 부지를 활용한 공공시설용지 배치 및 주거용지의 정형화로 불용지 최소화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만 조성하여 장기간 거주 및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제도권 임대주택 공급 가능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단계공원) 내 취락, 농경지 등으로 기획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여 환경영향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용지 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계획하여 주거환경의 다양성 확보 ○ 계획지구 내 공공시설용지를 서측과 동측으로 분산 배치하여 단계공원 등 이용객의 편리성 확보 																																										

〈표 2.2.2-3 계속〉 수요·공급에 따른 대안 비교·분석

구분	대안1	대안2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만 조성하여 단조로운 주거지역 형성 ○계획지구 남측의 비정형화 부지를 활용한 공공시설용지 배치로 단계공원 등 이용객의 편리성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북측 공동주택용지의 출입구가 1개소만 조성 가능하며, 공원으로 인한 단절로 근생시설 및 공공시설의 이용상 불편 초래 ○계획지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봉화로에서 기타시설 용지, 근린생활시설 용지의 진입을 위한 교차로 조성시 최소간격 침해 우려 ○주거용지의 비정형화로 불용지 다수 발생 ○공공시설용지 분산으로 인해 계획지구 거주민의 이용성 저하 및 지구 서측 산림부 일부 훼손 ○봉화로와 인접하여 지구 남측에 공동주택용지가 위치하여 교통소음 영향 발생 예상
검토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주변 주거지역의 연계성, 주택수요 적극 대응, 및 기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단계공원)을 활용한 산림녹지축 형성, 생태축 연결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대안1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선정 (안)	○	

3) 입지에 대한 비교·검토

가) 지구계 대안 검토

- 본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도시계획, 입지 특성, 원주시 도시개발 현황, 계획의 필요성, 누적환경영향, 토지이용현황 및 관계기관 검토 의견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적,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구상안 수립을 위해 계획지구【입지】에 따른 지구계에 대하여 3개의 대안을 비교·검토하였음

〈표 2.2.2-4〉 지구계 입지에 대한 비교

구분	대안1	대안2	대안3
토지 이용 구상안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면적 : 276,653m² ○ 현황도로경계, 기 개발지(지적 및 현황), 단계공원 경계(포함) 등의 주변여건 및 계획의 현실성을 고려한 구역 경계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면적 : 335,119m² ○ 현황도로경계, 기 개발지(지적 및 현황), 단계공원 경계(포함) 등의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계획지구 경계를 최대한 설정 ○ 계획지구 남측의 기존 취락지역을 포함하여 구역계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면적 : 207,840m² ○ 현황도로경계, 단계공원 경계(포함) 등의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계획지구 경계 설정 ○ 「원주시 단계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2018. 10. 두산건설(주)」 협의시 계획된 지구경계로 편입면적을 최소화함

원주 단계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서

〈표 2.2.2-4 계속〉 지구계 입지에 대한 비교

구분	대안1	대안2	대안3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내부 지장물 최소화로 사업비 절감 ○주변 여건 환경, 단계공원 경계(포함) 등을 현실성 있게 고려한 구역계 설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가능 및 민원 저감 ○대안2와 비교시 지구 북측 중앙선 철도소음에 의한 소음 영향 저감 ○주변지역의 난개발 확산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지역의 난개발 확산 예방 ○추가적인 계획지구 면적 확보를 통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공급량 확대 가능 ○구역계 확대를 통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단계공원)의 훼손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구 내부 지장물, 기존 취락지의 편입 최소화로 사업비 절감 ○계획지구 남측의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 일부 제척 ○대안1,2와 비교시 지구 북측 중앙선 철도소음에 의한 소음영향 저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취락지 일부 편입에 따른 민원 발생 예상 ○대안3과 비교시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 추가 편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역계 확대에 의한 편입지역 증가, 기존 취락지구 편입 등으로 인한 토지보상비 증가, 다수 민원 발생 등 예상 ○대안1, 3과 비교시 추가적인 편입지역 발생으로 기존 취락지, 농경지 등으로 포함으로 사업 장기화 예상 ○계획지구 북측으로 중앙선과 인접하여 철도소음 등에 의한 주거환경 영향 우려 ○계획지구 서측의 기존 농경지 지역 활용을 위한 별도 진입로 확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입면적 최소화로 인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량 축소에 따라 공공성 및 안정적 주택수급성 저하 ○주변지역의 난개발 확산 우려 ○편입부지 축소로 인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량 확보를 위하여 구릉성 산지부 등이 포함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단계공원) 일부 개발이 불가피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낮음
검토 결과	○주변여건 및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실적인 계획지구 구역계를 선정한 대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선정 (안)	○		

2.2.3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1) 평가항목의 선정

- 본 계획과 관련된 주요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규정(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에 규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기본계획 세부평가항목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2018. 12. 12,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 12, 환경부」 등을 참고하였으며,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의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을 설정함

〈표 2.2.3-1〉 평가항목 설정 및 사유

평가항목		선정(미포함) 사유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본 계획 관련 기존 개발계획 및 상위계획(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 계획), 관련계획(환경보전계획 및 환경관련계획 등)과 동 계획 과의 연계성 및 부합 여부 조사결과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2016.10, 국토교통부」 등 관련 법률 등 환경관계법상의 환경보전시책 부합여부 및 입지규제 접촉여부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계획비교】 , 【입지】 및 【수요·공급】 등의 대안설정 및 분석	
입지의 타당성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법정보호종 출현여부 파악 및 보호종 등의 출현 시 보호대책 수립 필요 ○생태·자연도 1등급, 식생보전 II등급이상 지역 훼손 여부 ○야생생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등 자연환경자산 파악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부지조성, 질·성토 등 계획 수립 시 지형변화 예상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보전지역 분포여부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변화 예상 등
		수환경의 보전	○공사 시 토사유출, 운영 시 오수발생 및 비점오염원 발생에 따른 저감방안 수립 필요 ○수 환경 관련 보호지역 영향 여부 ○홍수량, 홍수위 검토를 통한 치수 안정성 부합여부 검토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기상, 환경질 및 주요 환경영향 요소 등 현황조사 ○계획시행에 따른 공사시 및 운영시 주변 정온시설 환경영향예측 (기상, 대기질, 토양, 소음 진동, 일조장해, 전파장해) 및 저감대책 검토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공사시 및 운영시 발생 오수 및 폐기물의 환경기초시설과 연계 처리 검토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폐기물 발생 및 처리대책 수립 필요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주변 개발사업 및 자연환경을 고려한 토지이용 구상안의 적정성 파악 및 편입 토지 보상대책 수립 ○인구유입 및 주거변화에 따른 영향검토		

2) 평가범위 및 방법

- 본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공동주택, 주택지역 및 학교 등)의 환경현황을 토대로 선정한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음

〈표 2.2.3-2〉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구 분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 범위
계획의 적정성	① 조사내용 : 상위 및 관련계획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본 계획 관련 기존 개발계획 및 상위 계획(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관련 계획(환경보전계획 및 환경관련계획 등)과 동 계획과의 연계성 및 부합 여부 조사결과에 따른 대안별 계획의 적정성 검토	-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 다양성 서식지 보전 ① 조사내용 ▶식물상 현황 : 식물분포 및 식생, 습지분포 등 ▶동물상 현황 : 분류군별 종 분포 및 서식현황 ▶특이할만한 종 분포 및 서식현황 ▶생태자연도 및 생태계현황 ② 조사범위 ^{*)} ▶중점 : 계획지구 및 주변하천 일대 - 계획지구(경계)에서 100~300m 이내 ▶광역 : 계획지구를 중심으로 환경부 전국자연환경조사 기본단위인 9개의 격자를 포함한 지역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등 X 2회	○식물상 : 식물상 및 식생변화, 주요종과 개체에 대한 영향, 훼손수목 발생 및 예측 ○동물상 : 분류군별 계획시행으로 인한 서식처 훼손 및 간섭에 따른 영향예측 및 평가 ○기타,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 및 서식 환경을 파악과 계획시행으로 이들 중에 미치는 영향과 그 범위를 종합적으로 예측 ○동·식물의 출현, 생육 등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 할 수 있는 시기에 현지 조사 실시	○계획지구(경계)에서 100~300m 이내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① 조사내용 ▶지형현황 및 분석, 주요 산맥 분포 현황, 지질 특성, 연약지반 검토 ▶특이지형 ② 조사범위 ▶계획지구 내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절·성토에 의한 지형변화 파악 ○토사유출, 비옥토 유출, 사면발생 및 사면 안정성 검토 ○생태축, 녹지축 등 단절 영향

〈표 2.2.3-2 계속〉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구 분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 범위
자연 환경의 보전	주변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	① 조사내용 ▶경관 우수지역 현황 ▶경관 훼손 예상지역 현황 ② 조사범위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현지조사를 통한 주요 조망점 선정 (근경·중경·원경)	○계획시행으로 인한 주요 조망점(원경·중경·근경)에서의 경관 영향 예측 ○경관변화 최소화 대책 수립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수환경의 보전	① 조사내용 ▶하천, 지하수에 대한 환경기준 설정 항목의 현황농도 ▶인근 수계에 미치는 영향 ② 조사범위 ▶계획지구 인근 하천, 호소 등 수계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지표수 6개 지점 × 2회 ▶지하수 2개 지점 × 2회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 예상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발생 ○비점오염물질 발생 및 배출부하량 예측 ○급수량 수요 발생에 따른 급수량 예측 및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처리 적정성 검토 ○생활하수에 따른 폐수 발생량 예측 및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처리 적정성 검토 ○수질오염총량 검토	○계획지구 및 주변수계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 경 기 준 의 부 합 성	□ 기상 ① 조사내용 ▶계획지구 주변 기상현황 ② 조사범위 ▶계획지구 ③ 조사방법 ▶인근 기상관측자료 분석·정리	○기상연보 자료분석을 통해 대기질 예측 시 기초자료로 활용	○계획지구 주변 기상대
		□ 대기질 ① 조사내용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현황 오염 원(면·산·점) 파악 ② 조사범위 ▶직·간접 영향권 : 계획지구 반경 500m 이내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7개 지점 × 2회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오염도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시행 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누적 평가 고려) ○면오염원은 AERMOD, 선오염원은 CALINE3 등의 적정 확산모델 이용	○계획지구 (경계)반경 500m 이내

〈표 2.2.3-2 계속〉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구 분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 범위
생활 환경의 안정성 부 합 성	<input type="checkbox"/> 토양 ① 조사내용 ▶ 토양오염우려기준 설정항목의 토양오염도 현황 파악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입지 여부 검토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3개 지점 × 2회	○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양오염 영향예측 ○ 계획지구 내 지장물 철거 시 토양오염 여부 파악 및 대책 수립	○ 계획지구
	<input type="checkbox"/> 소음·진동 ① 조사내용 ▶ 소음·진동 현황 및 주요 발생원조사 ▶ 정온시설을 포함한 계획지구 주변 시설물 분포현황 (공동주택 등의 고층 건물은 층수 확인)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반경 300m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소음 : 5지점 × 2회 ▶ 진동 : 5지점 × 2회	○ 공사시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예측(합성소음도 산출식 및 점음원 거리 감쇠식 이용) ○ 운영시 지구 외부 및 내부 통행차량(봉화로 등)에 따른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소음 영향예측(환경목표기준 설정)	○ 계획지구 (경계)반경 300m 이내
	<input type="checkbox"/> 일조장해 ① 조사내용 ▶ 계획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등의 건축물로 인한 주변지역 일조장해 여부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토지이용구상안에 따른 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근린생활용지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일조영향 해당여부 및 예측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input type="checkbox"/> 전파장해 ① 조사내용 ▶ 전파장해 주요 발생원 및 TV, 라디오 수신현황 조사 ②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조사 등	○ 계획시행시 고층건물 입지로 인해 지구 서측 무상마을 전파장해(TV, 라디오 수신 등) 영향예측 및 검토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표 2.2.3-2 계속〉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구 분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 범위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 기초 시설의 적정성	① 조사내용 ▶환경기초시설 현황조사 및 오염물질 연계처리 가능성 검토 ② 조사범위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조사	○오·폐수 및 폐기물 등의 적정처리를 위 한 계획지구 주변 환경기초시설 현황 파악 및 연계처리 적정성 검토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① 조사내용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자원 및 에너지순환 관련 법규 적용 및 준수 여부 검토 ② 조사범위 ▶계획지구 ③ 조사방법 ▶문헌조사 조사	○계획시행으로 발생하는 공중별, 종류별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방안 ○분리수거 및 현장 재활용방안 제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환경기초시 설과의 연계처리 적정성 검토	○계획지구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① 조사내용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편입용지 및 지장물 파악 ② 조사범위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계획시행 전·후에 따른 토지이용변화 파악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환경부, '11.6)」 참고하여 현재 상태 생태면적률 및 목표 생태면적률 검토 ○생태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토지 이용구상안 수립	○계획지구
		□ 인구주거 ① 조사내용 ▶인구 및 주거 현황 파악, 장래 변화 예측 ② 조사범위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조사	○상위 및 관련계획, 인근 개발현황(주택 개발 및 공급량, 분양률 등)을 고려한 주택 수요·공급 적정성 검토 ○관련 계획에 따른 유입인구 변화 예측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주) 1. 동·식물상 조사범위 : 「환경영향평가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의 자연생태환경조사 가이드라인」 참조(면사업 기준)
 - 현지조사 범위 : 300m이내(포유류, 조류), 100m이내(식물상, 식생,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상·하류 100m 범위
 (어류, 담수무척추동물)
 - 광역조사 범위 :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환경부 전국자연환경조사 기본단위인 9개의 격자를 포함한 지역
 2. 「원주시 단계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2018.06, 두산건설(주)」를 참고하여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을 계획함

자료 : 1.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시행령【별표1】 제1호 나목
 2.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2018. 12. 12, 환경부
 3.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 01, 환경부
 4.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 12, 환경부
 5. 「원주시 단계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2018.06, 두산건설(주)」

나. 환경영향평가

1) 평가항목의 선정

- 본 사업과 관련된 주요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규정(시행령 【별표1】 제1호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2018. 12. 12, 환경부」 등을 참고함
- 사업의 계획 및 지역 특성(공동주택, 주택지역 및 학교 등)을 토대로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항목에 대하여 총 16개 항목을 중점평가항목으로 설정하였으며, 지역특성 파악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1개 항목을 현황조사 항목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5개 항목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하였음

〈표 2.2.3-3〉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중 주요평가 항목

구 분	대 상 사 업	주 요 평 가 항 목
가. 도시의 개발사업	1) 도시개발(주택지조성 또는 시가지 조성 등)사업 2) 도시정비사업 3) 도시계획시설 사업 중 다음의 사업 (운하, 유통업무설비, 주차장시설, 시장) 4) 대지조성사업 5) 택지개발사업 또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1) 내지 5)의 사업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일조장해, 위락 경관

자료 : 환경영향평가 스코핑 가이드라인, 2011. 12, 환경부

〈표 2.2.3-4〉 중점평가, 현황조사 및 제외항목 선정

구 분	중점평가항목	현황조사항목	제외항목
계	16개 항목	1개 항목	5개 항목
대기환경	○대기질 ○온실가스	○기상	○악취
수환경	○수질 ○수리·수문	-	○해양환경
토지환경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	-
자연생태환경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	-
생활환경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경관 ○일조장해 ○전파장해	-	○위락 ○위생·공중보건
사회경제환경	○인구 ○주거	-	○산업

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2018. 12. 12, 환경부」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부록”편에 본 계획 관련 상위계획(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관련계획(환경보전계획 및 환경관련계획 등)과 동 계획과의 연계성 및 부합 여부 조사결과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결과를 제시하겠음

〈표 2.2.3-5〉 중점평가, 현황조사 및 제외항목 선정 사유

구분		평가항목			선정(미포함) 사유
		중점	현황	제외	
		16개	1개	5개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	-	-	○각 분류군별(법정보호종 포함) 서식현황 ○사업시행에 따른 식생훼손 및 서식지 감소 등의 동·식물상 변화 ○공사시 장비투입 및 작업으로 인한 소음발생으로 일시적인 영향 발생
	자연환경자산	○	-	-	○각종 보전·보호지역 분포현황 및 영향유무 파악
대기 환경	기상	-	○	-	○대기질 예측 시 기초자료로 활용
	대기질	○	-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및 장비투입에 따른 오염물질발생 ○운영시 고정오염원(에너지사용 등) 및 이동오염원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대기질 영향 예상
	악취	-	-	○	○사업시행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 미미
	온실가스	○	-	-	○공사시 투입장비 및 운영시 이동오염원 및 지구 내 에너지(난방, 취사 등)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
수환경	수질	○	-	-	○절·성토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한 하천의 수질변화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발생 ○운영시 계획지구 내 오·폐수 및 비점오염물질 발생
	수리·수문	○	-	-	○인근 수계의 수리수문 현황조사 및 영향예측
	해양환경	-	-	○	○사업의 특성 및 입지여건상 해양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토지 환경	토지이용	○	-	-	○공동주택용지, 공원·녹지 조성 등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
	토 양	○	-	-	○공사시 공사장비 발생 폐유,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해 토양오염 발생
	지형·지질	○	-	-	○토공구간의 절·성토 공사로 인한 지형변화 및 사면발생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	-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
	소음·진동	○	-	-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소음·진동영향 ○운영시 차량(봉화로 등)에 의한 교통 소음 영향
	경관	○	-	-	○절·성토 및 신규 건축물 설치에 의한 경관변화 예상
	위생·공중보건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미미
	위락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미미
	일조장해	○	-	-	○사업시행 시 공동주택용지 등의 고층건물 입지에 따른 일조장해 현황 파악
	전파장해	○	-	-	○사업시행시 고층건물 입지로 인해 지구 서측 무상마을 전파장해 (TV, 라디오 수신 등) 영향 검토
사회 경제 환경	인구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상주 및 상근인구 변화 발생
	주거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거 현황 변화 발생
	산업	-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미미

2) 평가범위 및 평가방법

- 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현황을 토대로 선정된 현황 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음

※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표 2.2.3-6〉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구 분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 범위
자연 생태 환경	동 · 식물상 ① 조사내용 ▶ 식물상 현황 : 식물분포 및 식생, 습지분포 등 ▶ 동물상 현황 : 분류군별 종 분포 및 서식현황 ▶ 특이할만한 종 분포 및 서식현황 ▶ 생태자연도 및 생태계현황 ② 조사범위 ^{주)} ▶ 중점 : 사업지구 및 주변하천 일대 - 사업지구(경계)에서 100~300m 이내 ▶ 광역 :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환경부 전국 자연환경조사 기본단위인 9개의 격자를 포함한 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등 X 2회	○ 식물상 : 식물상 및 식생변화, 주요종과 개체에 대한 영향, 훼손수목 발생 및 예측 ○ 동물상 : 분류군별 사업시행으로 인한 서식처 훼손 및 간섭에 따른 영향예측 및 평가 ○ 기타,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 및 그 서식환경을 파악과 사업 시행으로 이들 중 에 미치는 영향과 그 범위를 종합적으로 예측 ○ 동·식물의 출현, 생육 등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 할 수 있는 시기에 현지조사 실시	○사업지구(경계)에서 100~300m 이내
	자연 환경 자산 ① 조사내용 ▶ 자연환경자산의 분포현황조사 : 멸종위기 야생생물, 습지보호구역, 산림 유전자원보호림,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자연환경자산 및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에 대한 훼손여부 파악 및 보전방안 수립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대 기 환 경	기 상 ① 조사내용 ▶ 사업지구 주변 기상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③ 조사방법 ▶ 인근 기상관측자료 분석·정리	○기상연보자료분석을 통해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사업지구 주변 기상대

〈표 2.2.3-6 계속〉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구 분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 범위
대 기 환 경	대 기 질	① 조사내용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현황 오염원 (면·선·점) 파악 ② 조사범위 ▶직·간접 영향권 : 사업지구 반경 500m 이내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7개 지점 × 2회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대기오염도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시행 시 대기 질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누적 평가 고려) ○면오염원은 AERMOD, 선오염원은 CALINE3 등의 적정 확산모델 이용	○사업지구 (경계)반경 500m 이내
	온 실 가 스	① 조사내용 ▶운영시 사업지구 내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이용시설 현황조사 ② 조사범위 ▶온실가스 변화가 예상되는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유사사례를 수집하여 분석·정리	○사업지구 공사시 장비가동, 운영시 온실 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이용시설의 도입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IPCC 배출계수 이용)	○사업지구
수 환 경	수 질	① 조사내용 ▶하천, 지하수에 대한 환경기준 설정항목 의 현황농도 ② 조사범위 ▶사업지구 인근 하천 등 수계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지표수 6개 지점 × 2회 ▶지하수 2개 지점 × 2회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 예상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발생 ○비점오염물질 발생 및 배출부하량 예측 ○급수량 수요 발생에 따른 급수량 예측 및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처리 적정성 검토 (관계기관 수용여부 포함) ○생활하수에 따른 폐수 발생량 예측 및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처리 적정성 검토 (관계기관 수용여부 포함)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
	수 리 수 문	① 조사내용 ▶인근 수계에 미치는 영향 ② 조사범위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 ③ 조사방법 ▶기존 관측 통계자료 활용	○공사 시 토사유출 및 운영 시 재해(홍수량, 홍수위 등) 영향 검토(재해영향평가서 참조)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

〈표 2.2.3-6 계속〉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구 분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 범위
토 지 환 경	토지 이용	① 조사내용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편입용지 및 지장물 파악 ② 조사범위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사업시행 전·후에 따른 토지이용변화 파악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환경부, '11.6)」 참고하여 현재 상태 생태면적률 및 목표 생태면적률 검토 ○생태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토지이용 구상안 수립	○사업지구
	토양	① 조사내용 ▶토양오염우려기준 설정항목의 토양오염도 현황 파악 ② 조사범위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3개 지점 × 2회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양오염 영향예측 ○지장물 철거시 토양오염여부 파악 및 대책 수립	○사업지구
	지형 · 지질	① 조사내용 ▶지형형상, 지질상황, 토질성상, 사면 안정성 검토, 연약지반 검토 ▶특이지형 ② 조사범위 ▶사업지구 내 ③ 조사방법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절. 성토고에 의한 지형변화 파악 ○토사유출, 비옥토 유출, 사면발생, 사면 안정성 등 ○생태축, 녹지축 등 단절 영향	○사업지구
생활 환경	친환 경적 자원 순환	① 조사내용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자원 및 에너지순환 관련 법규 적용 및 준수 여부 검토 ② 조사범위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문헌조사 조사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공중별, 종류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방안 ○분리수거 및 현장 재활용방안 제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처리 적정성 검토 (관계기관 수용 여부 포함)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소음 · 진동	① 조사내용 ▶소음·진동 현황 및 주요 발생원조사 ▶정온시설을 포함한 사업지구 주변 시설물 분포현황 (공동주택 등의 고층건물은 층수 확인) ② 조사범위 ▶사업지구 반경 300m	○공사시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 예측(합성소음도 산출식 및 점음원 거리 감쇠식 이용)	○사업지구 (경계) 반경 300m이내

〈표 2.2.3-6 계속〉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구 분		현황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평가 범위
생활 환경	소음 · 진동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④ 조사지점 ▶ 소음 : 5지점 × 2회 ▶ 진동 : 5지점 × 2회	○ 운영시 지구 외부 및 내부 통행차량(봉화로 등)에 따른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 소음 영향 예측(환경목표기준 설정)	○ 사업지구(경계) 반경 300m 이내
	경관	① 조사내용 ▶ 경관 우수지역 현황 ▶ 경관 훼손 예상지역 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현지조사를 통한 주요 조망점 선정(근경·중경·원경)	○ 계획시행으로 인한 주요 조망점(원경·중경·근경)에서의 경관 영향 예측 ○ 조망점별 경관시뮬레이션 실시 ○ 경관변화 최소화대책 수립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일조 장해	① 조사내용 ▶ 사업지구 주변 고층건물 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현지조사 및 문헌자료	○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사업지구 내 일조영향 해당여부 및 예측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전파 장해	① 조사내용 ▶ 전파장해 주요 발생원 및 TV, 라디오 수신현황 조사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조사	○ 사업시행시 고층건물 입지로 인해 지구 서측 무상마을 전파장해 영향예측 및 검토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사회 경제 환경	인구 · 주거	① 조사내용 ▶ 인구 및 주거 현황 파악, 장래 변화예측 ②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조사	○ 상위 및 관련계획, 인근 개발현황(주택 개발 및 공급량, 분양률 등)을 고려한 주택 수요·공급 적정성 검토 ○ 관련 사업에 따른 유입인구 변화 예측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주) 1. 동·식물상 조사범위 : 「환경영향평가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의 자연생태환경조사 가이드라인」 참조(면사업 기준)
 - 현지조사 범위 : 300m 이내(포유류, 조류), 100m 이내(식물상, 식생,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상·하류 100m 범위(어류, 담수무척추동물)
 - 광역조사 범위 :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환경부 전국자연환경조사 기본단위인 9개의 격자를 포함한 지역
 2. 「원주시 단계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2018.06, 두산건설(주)」를 참고하여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을 계획함

자료 : 1.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시행령 【별표1】 제2호)
 2.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2018. 12. 12, 환경부
 3.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 01, 환경부
 4. 「원주시 단계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2018.06, 두산건설(주)」

2.2.4 환경현황 조사계획

가. 조사항목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획지구 내 및 주변에 분포하는 주거지역,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환경질(대기질, 지표·지하수질, 토양, 소음·진동) 측정계획 및 동·식물상 조사 계획을 수립함
- 환경질 및 동·식물상 조사는 항목별 특성과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문헌자료 활용시 계획지구와 관련성이 있는 최근 자료(최대 10년 간) 활용할 계획임
- 동·식물상 조사는 「환경영향평가등의 자연생태조사 기초자료 작성에 관한 지침 (환경부, '13.3)」 참고하고 조사자 인적사항(하도급 포함), 근거자료 등의 제시를 계획함

〈표 2.2.4-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환경질 현황조사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 지점	조사횟수		비 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기질	○ PM-10, PM-2.5, SO ₂ , NO ₂ , CO, O ₃ , Pb, 벤젠(8개 항목)	7지점	2회	2회	3일
지표수질	○ pH, BOD, DO, SS, 총대장균군수, Cd, As, CN, Hg, 유기인, Pb, Cr ⁶⁺ , PCB, ABS, COD(Cr ⁶⁺), T-P(16개 항목)	6지점	2회	2회	-
지하수질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Pb, Hg, As, Cr, NH ₃ -N, NO ₂ -N, Cd, Al, 페놀, 경도, KMnO ₄ 소비량, 맛, 냄새, Cu, 색도, pH, Zn, Cl, 증발잔류물, Fe, Mn, 탁도, 황산이온(25개 항목)	2지점	2회	2회	-
토양	○ Cd, Cu, Pb, As, Hg, Cr ⁶⁺ , Zn, Ni, 불소, 유기인, PCB, CN, 페놀류, BTEX, TPH, TCE, PCE, 벤조(a)피렌(18개 항목)	3지점	2회	2회	-
소음	○ 소음도	8지점	2회	2회	-
진동	○ 진동도	8지점	2회	2회	-

주) 소음·진동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검토·반영하여 3지점(NV-6~8) 추가를 계획함

〈표 2.2.4-2〉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동·식물상 현황조사

구 분	조사항목	조사범위	조사시기
동·식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식물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상 및 식생 ○ 육상동물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의 종분포 현황 ○ 법정보호종의 분포 및 서식 현황 ○ 생태·자연도 및 생태계 현황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00~300m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규정에 의거 동·식물의 출현 생육 등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 할 수 있는 시기에 현지조사 실시

〈표 2.2.4-2 계속〉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동·식물상 현황조사

구 분	조사항목	조사범위	조사시기
동·식물상	○기타 문헌 조사 - 최근 전국자연환경조사 보고서 - 인근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등 - 원주시 생태조사 자료 - 「원주시 단계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2018.06, 두산건설(주)」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00~300m ^{주)}	○ 관련 규정에 의거 동·식물의 출현, 생육 등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 할 수 있는 시기에 현지조사 실시

주) 1. 동·식물상 조사범위 : 「환경영향평가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의 자연생태환경조사 가이드라인」 참조(면사업 기준)
 - 현지조사 범위 : 300m이내(포유류, 조류), 100m이내(식물상, 식생,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상·하류 100m 범위(어류, 담수무척추동물)
 - 광역조사 범위 :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환경부 전국자연환경조사 기본단위인 9개의 격자를 포함한 지역
 2. 계획지구 동·식물상 현황조사 계획 중 육수동물상은 현지조사 및 기존 문헌조사 결과,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으로 수계가 위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조사 분류군에서 제외함

나. 조사지점

- 환경질 측정지점은 사업계획 분석 및 현장조사를 통해 계획지구의 주변 환경, 수계, 정온 시설 등 영향예상지역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선정함

〈표 2.2.4-3〉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환경질 조사지점

구 분	조사지점 위치	비 고
대기질	A - 1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751-6	우산동 단독주택
	A - 2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823 원주한라비발디2단지APT	원주한라비발디2단지APT
	A - 3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170 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	한국폴리텍3대학
	A - 4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산85-2 무상경로당	무상마을(무상경로당)
	A - 5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82 단계초등학교	단계초등학교
	A - 6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507 단계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단계현대APT
	A - 7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481 복원여자고등학교	복원여자고등학교
지표수질	W - 1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1-15	원주천
	W - 2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65-3	원주천
	W - 3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328	소하천
	W - 4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312-4	소하천
	W - 5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759-3	농수로
	W - 6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789-7	농수로

〈표 2.2.4-3 계속〉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조사지점

구 분		조사지점 위치	비 고
지하 수질	GW - 1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547-1	단독주택
	GW - 2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575-2	단독주택
토양	S - 1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산 71	밭
	S - 2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95-1	구릉지
	S - 3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550	밭
소음 · 진동	NV - 1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823 원주한라비발디2단지APT	주거시설 (원주한라비발디2단지APT)
	NV - 2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533-1 (시도 봉화로, 거리가격 10m)	봉화로 주변
	NV - 3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1165 원주단계이안2단지APT	주거시설 (원주단계이안2단지APT)
	NV - 4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545	주거시설 (단계동 단독주택)
	NV - 5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507 단계현대아파트	주거시설 (단계현대APT)
	NV - 6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102-6 여의도 순복음 원주교회	종교시설 (여의도 순복음 원주교회)
	NV - 7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818 원주한라비발디1단지APT	주거시설 (원주한라비발디1단지APT)
	NV - 8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1166 원주단계이안1단지APT	주거시설 (원주단계이안1단지APT)

- 주) 1. 측정지점은 현장여건 및 관계기관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시 협의결과 등을 고려하여 항목별 측정지점을 계획함
 3. 소음·진동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검토·반영하여 3지점(NV-6~8) 추가를 계획함

다. 조사지점 선정사유

- 각 항목별 환경질 측정지점 선정사유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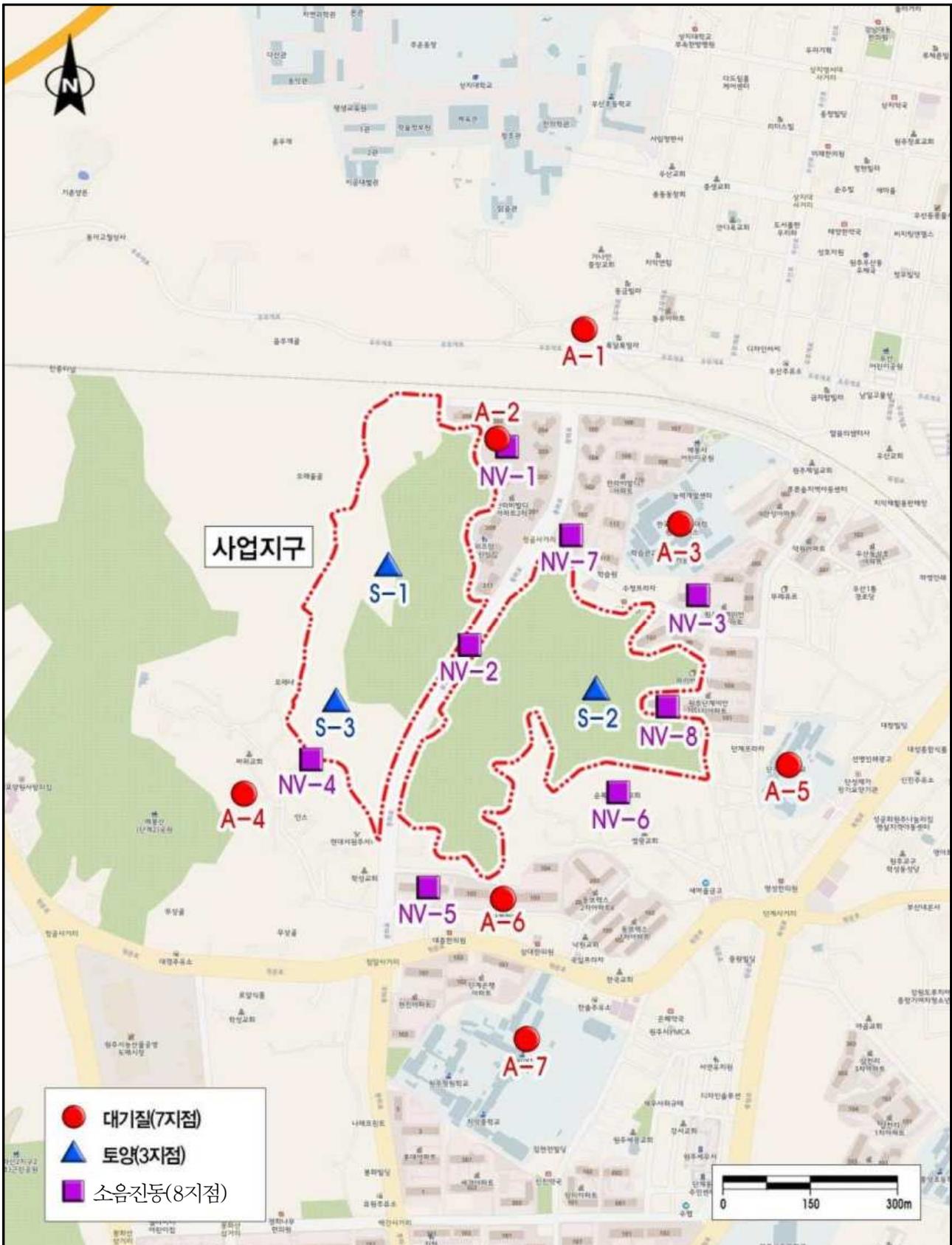
〈표 2.2.4-4〉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환경질 조사지점 선정사유

구 분	조사지점 위치	선정사유
대기질	A - 1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751-6 ○사업지구 북측 주거시설(단독주택)로 공사시 간접적인 영향 예상
	A - 2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823 원주한라비발디 2단지APT ○사업지구 북측 주거시설(공동주택)로 공사시 직접적인 영향 예상
	A - 3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170 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 ○사업지구 북측 교육시설(학교)로 공사시 직·간접적인 영향 예상
	A - 4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산85-2 무상경로당 ○사업지구 남서측 주민편의시설(무상경로당)로 간접적인 영향 예상
	A - 5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82 단계초등학교 ○사업지구 동측 교육시설(학교)로 간접적인 영향 예상
	A - 6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507 단계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사업지구 남측 주거시설(공동주택)로 간접적인 영향 예상
	A - 7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481 복원여자고등학교 ○사업지구 남측 교육시설(학교)로 간접적인 영향 예상
지표 수질	W - 1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1-15(원주천) ○사업지구 동측 원주천 수질현황 파악
	W - 2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65-3(원주천) ○사업지구 동측 원주천 수질현황 파악
	W - 3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328(소하천) ○사업지구 서류 소하천 수질현황 파악
	W - 4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312-4(소하천) ○사업지구 서측 소하천 수질현황 파악
	W - 5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759-3(농수로) ○사업지구 내부 농수로 수질현황 파악
	W - 6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789-7(농수로) ○사업지구 내부 농수로 수질현황 파악
지하 수질	GW - 1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547-1(단독주택) ○사업지구 개발로 인한 지하수 영향 검토
	GW - 2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575-2(단독주택) ○사업지구 개발로 인한 지하수 영향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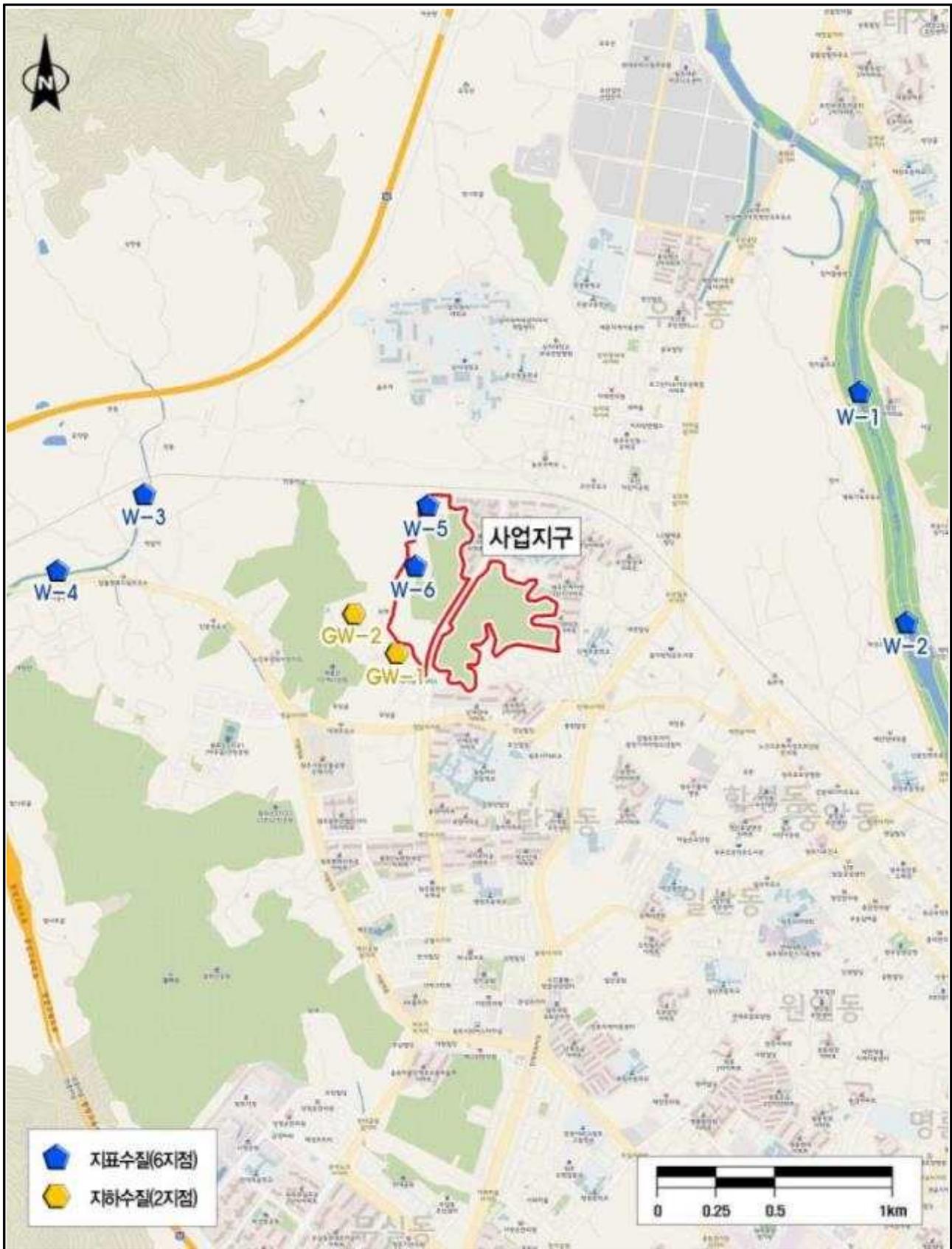
〈표 2.2.4-4 계속〉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환경질 조사지점 선정시유

구 분	조사지점 위치	비 고
토양	S - 1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산 71(밭)	○사업지구 개발로 인한 토양(밭)에 미치는 영향 검토 지점
	S - 2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95-1(구릉지)	○계획지구 개발로 인한 토양(구릉지)에 미치는 영향 검토 지점
	S - 3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550(밭)	○계획지구 개발로 인한 토양(밭)에 미치는 영향 검토 지점
소음 · 진동	NV - 1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823 원주한라비발디 2단지APT	○사업지구 북서측 경계부에 인접한 주거시설 (공동주택) 소음·진동 현황파악
	NV - 2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533-1 (봉화로에서 거리이격 10m)	○사업지구를 관통하는 도로(봉화로)에 의한 교통 소음·진동 현황 파악
	NV - 3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1165 원주단계이안 2단지APT	○사업지구 동측의 주거시설(공동주택)로 소음·진동 현황파악
	NV - 4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545 단독주택	○사업지구 남서측 경계부에 위치한 주거시설 (단독주택)의 생활소음·진동 현황 파악
	NV - 5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507 단계현대아파트	○사업지구 동측의 주거시설(공동주택)로 소음·진동 현황파악
	NV - 6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102-6 여의도 순복음 원주교회	○사업지구 남동측 경계부에 위치한 종교시설 (여의도 순복음 원주교회)의 생활소음·진동 현황 파악
	NV - 7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818 원주한라비발디 1단지APT	○사업지구 북측 경계부에 인접한 주거시설 (공동주택) 소음·진동 현황파악
	NV - 8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1166 원주단계 이안1단지APT	○사업지구 동측 경계부에 인접한 주거시설 (공동주택) 소음·진동 현황파악

- 주) 1. 측정지점은 현장여건 및 관계기관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지 협의결과 등을 고려하여 항목별 측정 지점을 계획함
 3. 소음·진동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검토·반영하여 3지점(NV-6~8) 추가를 계획함



(그림 2.2.4-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기시 환경질 현황조사 지점도(대기질, 토양, 소음·진동)



(그림 2.2.4-2)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기시 환경질 현황조사 지점도(수질, 지하수질)

2.2.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을 통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나. 환경영향평가

-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을 통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